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2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 임종득 • 김형동 • 엄태영

김상훈 · 천하람 · 김예지

이종배 • 이상휘 • 강명구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 있는 사람 또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함)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경영, 창업, 교육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젊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 신설).

법률 제 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계농어업인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이하 "정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정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위한 상담
 -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정보제 공
 -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컨설팅
 - 5. 지역내 후계 · 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13조의2(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이하 "정착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정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상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의 경영 컨설팅

- 5. 지역내 후계·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과 청년 등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 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정착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 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 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